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739

제출년월일 : 2015.11.18.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 위반 등 불합리한 규정 정비해 주민 불편·부담 완화
 -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불합리한 조례 규정 개정토록 시달

□ 주요내용

- 상위법령 위반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4항제1호나목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으로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상위법령과 달리 지역을 제한하여 “안산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수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 제11조제1항에서는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50명 이상의 연서로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유통분쟁 조정을 원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50명 이상의 연서로”라는 제한 규정 삭제
 - 유통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조정의 거부 및 중지사유가 상위법령과 달리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 *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이 당해 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유통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2조제2호에는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중 「환경분쟁 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이 다양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환경분쟁 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도 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도록 분쟁조정 제외대상 규정 삭제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제2조제3호에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조항이 있어 이를 삭제
 -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3호
 - * 그 밖에 당해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 반영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가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조례 제2조에 반영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제2호
 - *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는 분쟁 조정 신청서의 기재사항으로 신청인의 성명·주소·연락처, 상대방의 성명·주소·연락처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11조제2항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의 연락처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반영

-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유통분쟁 당사자를 「대규모점포등」으로 규정하여 대규모점포 뿐만 아니라 준대규모점포를 포함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대규모점포」로 규정하여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대규모점포」를 「대규모점포등」으로 수정(해당조례 : 제2조, 제11조)

○ 기타 불합리한 규정 삭제

- 조례 제6조제3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가부동수인 경우는 과반수가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것은 의사 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단서 규정인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를 삭제

조례 개정안: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2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3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13. 9. 24. ~ 10. 14. (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붙임4

○ 방침 결정문: 붙임5

< 복임1 >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규모점포와”를 “대규모점포등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조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 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제6조제3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및 주소”를 각각 “· 주소 및 연락처”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지역경제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지역경제과장 김 종 수
	담당·팀장 직위·성명	소상공인계장 안 성 영
	담당자 성명·전화	전 병 두 (행정 2696)

< 불임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생략) <p>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u>대규모 점포와</u>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p> <p>〈신 설〉</p> <p>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다만,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p> <p>3. 그 밖에 당해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전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p>	제2조(기능) (현행과 같음) <p>1. ----- -----<u>대규모 점포등과</u> ----- ----- ----- -----</p> <p>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p> <p>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 환경에 관한 분쟁</p>
제3조(구성) ① (생략) <p>② (생략)</p> <p>1. (생략)</p> <p>2. <u>안산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u></p> <p>3.~6. (생략)</p>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상공회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u>임원 또는 직원</u></p> <p>3.~6. (현행과 같음)</p>
제6조(회의) <p>①·② (생략)</p>	제6조(회의) <p>①·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p>	<p>③ ----- ----- -----<단서 삭제></p>
<p>제11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50명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 관리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6. (생략) 	<p>제11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주소 및 연락처 2. ----- · 주소 및 연락처 3.~6. (현행과 같음)
<p>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쟁이 당해 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p>② (생략)</p>	<p>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 ----- -----경우에는----- ----- ----- ----- <삭제> <삭제> <삭제> ② (현행과 같음)</p>